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76

발의연월일: 2025. 3. 31.

발 의 자:신영대·허성무·홍기원

전재수 · 이해민 · 김정호

유준병 • 한민수 • 강준혁

김기표 · 염태영 · 박성준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연평균 약 500만 톤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4,314 톤의 음 식물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집단급식소의 잔식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기부하는 '잔식 기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잔식 기부는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최대한 줄이는 차원에서 환경보호 효과를 지남과 동시에, 경제적 사유로 식품 구매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끼니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음.

참고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세종특별시 교육청의 경우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배식하지 않고 남은 음식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

이에 현행법에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 기부된 잔식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가 잔식의 기부를 위하여 준수할 사항을 규정 하여 안전한 잔식 기부 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집단급식소"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7. "잔식"이란 집단급식소에서 조리되었으나 배식되지 아니한 상태의 식품을 말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조의2(잔식의 기부)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잔식을 기부할 수 있다.
 - 1.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조리 후 4시간 이내일 것
 - 2.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가 철저히 되었을 것
 - 3. 식품이 부패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였을 것
 - 4. 제공 전 잔식의 보관 온도, 보관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을 것
 - ② 제1항에 따라 기부된 잔식은 조리한 당일 제공·섭취됨을 원칙

- 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리한 다음 날 제공할 경우 이를 제공하는 자는 재가열 등 위생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기부의 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잔식을 기부하거나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집단급식소"란 「식품위생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시
	설을 말한다.
<u><신 설></u>	7. "잔식"이란 집단급식소에서
	조리되었으나 배식되지 아니
	한 상태의 식품을 말한다.
<u><신 설></u>	제6조의2(잔식의 기부) ① 집단급
	<u>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u>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잔
	식을 기부할 수 있다.
	1.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조리 후 4시
	<u>간 이내일 것</u>
	2.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
	니하도록 위생관리가 철저히
	되었을 것
	3. 식품이 부패되거나 변질되지
	<u>아니하였을 것</u>
	4. 제공 전 잔식의 보관 온도,
	보관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

제14조(과태료) <신 설>

① (생 략)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을

 것

- ② 제1항에 따라 기부된 잔식은 조리한 당일 제공·섭취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 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리한 다음 날 제공할 경우 이를 제공하는 자는 재가열 등 위생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기부의 방법
 •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과태료) ①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잔 식을 기부하거나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
 -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 ③ 제1항 및 제2항-----
